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4. 20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4월 2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4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0. 4. 15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 案 說 明 者 : 행 정 구 장 송 요 출)

가. 제안이유

영등포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『평생교육법』 제31조제6항에 해당되는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지원 등 개정(안 제4조제1항)
- 법적 평생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규정 신설 (안 제4조제2항)

3.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(專 門 委 員 이 현 영)

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6항에 따라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형태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,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이 사항은 없음.

4. 審 査 結 課 : 原 案 可 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71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『평생교육법』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,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 (2009. 5. 8공포, 2009. 8. 9시행)

나. 예산조치 : 2010년도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필요없음.

라. 기 타

(1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 【‘10. 3. 11 ~ 3. 31(20일간)】 결과 : 의견없음.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,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 구청장은 평생학습 참여자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,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